

	전과규정	규정번호	3-4-11
		제정일자	2010.08.23.
		개정일자	2020.06.01.
		개정차수	7차
		소관부서	교무입학처

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학칙 제32조(전과)에 의한 교내 전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과 신청) ① 전과의 신청은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에 한하여 신청한다. 다만, 복학 시 학과개편(통합, 폐지, 명칭변경)으로 인해 전과 할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할 수 있으며, 동일학년으로 전과하여야 한다.

② 전과의 신청은 학과장을 경유하여 교무입학처에 제출한다.

제3조(전과 인원) 전과인원은 전출학과 및 전입학과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이내에서 허가한다. 다만, 학과개편(통합, 폐지, 명칭변경)으로 인해 전과 할 경우에는 이를 예외로 한다.

제4조(전과의 심사 및 허가) ① 전과 신청자가 제3조의 인원을 초과될 경우에는 재학기간중의 성적으로 전과를 허가 한다.

② 전과는 매학기 2주 이내에 신청하며,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③ 전과 전형심사는 전입과에서 실시하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전과 제한) 다음 호에 해당하는 전과는 불허한다.

1. 야간 학과에서 주간 학과로의 전과
2. 면허취득과 관련된 간호학과, 임상병리과, 방사선과, 물리치료과와 유아교육과로의 전과
3. 계약학과, 산업체위탁 및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으로 입학된 자

제6조(이수학점) 기 취득학점 중 교양과목은 전부 인정하며 전공과목은 전입학과에서 심의하여 대체 가능과목에 한해 인정하되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 년 8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 년 6 월 1 일부터 시행한다.